

# 〈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정관〉

1996. 05. 03. 제정  
2000. 11. 21. 개정  
2002. 09. 10. 개정  
2015. 06. 01. 개정  
2019. 08. 27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회는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(이하 “본회”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회는 성숙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와 지역본부 등)**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② 광역시,도에 본부와 시,군,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창안과 대국민교육, 학술, 문화행사
2.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입법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
3. 국회 및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도 연구
4. 외국 의회 보좌관 조직과의 유대 및 협력사업
5. 본회 홍보사업 및 활발한 연구 발표를 위한 간행물 발간
6.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건의
7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 각 호의 부대사업

## 제 2 장 회 원

**제5조(구성 및 자격)** ①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 (이하 정회원은 “회원”이라 한다)

② 회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되었거나 현재 등록된 자로 본회 정관에 동의하여 입회원서 및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.

③ 이사회 의결에 따라 외부인사도 입회원서 및 회비를 납입하고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
④ 명예회원은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**제6조(권리와 의무)** ① 회원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운영에 참

여할 권리를 평등히 가진다.

- ② 본회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③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본회의 회원은 회비 및 제반 납입금을 소정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탈퇴)** 회원 및 특별회원, 명예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
**제8조(제명)**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이를 제명할 수 있다.

1. 정관·기타 규정을 준수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및 특별회원, 명예회원
2.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 및 특별회원, 명예회원

**제9조(징계)** ①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정관 및 기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  2.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
  3.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
- ② 제1항의 이유로 징계대상 회원은 당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.
-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경고
  2. 자격정지
  3. 제명

**제10조(포상)**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3 장 임 원

**제11조(조직과 구성)**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 장: 1인
2. 부회장 : 수석부회장 1인, 상임부회장 약간명
3. 이사 : 70인 이내
4. 감 사: 2인
5. 사무총장: 1인
6. 사무부총장: 2인
7. 정책연구소장 : 2인
8. 대외협력처장 : 1인

9. 분과위원장: 약간 명

단,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은 상임부회장을 겸직한다.

**제12조(선임)** ① 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본회 임명직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국회사무처에 보고해야 한다.

**제13조(임기)**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임원은 후임자 선임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.

② 선거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보궐 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.

③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
④ 보임 또는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14조(해임)** 임무를 소홀히 한 임명직 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 후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.

**제15조(임무)**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회계를 총괄한다.
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분담 관장한다.
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⑤ 사무총장은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며 각 회계·회무를 처리하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국회사무처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수행

2.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

3.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의 수탁 및 위탁

4. 기타 본회 및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총괄

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.

⑧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⑨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재산회계의 감사

2. 기타 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⑩ 대외협력처장은 대외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16조(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)**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,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고, 전직 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.

## 제 4 장 총 회

**제17조(회의의 종류)** ①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.

1. 총회 2. 기타 필요한 회의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**제18조(의결사항)**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(제정, 개정, 폐지)
2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의결
3. 회장 및 감사선출
4.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

**제19조(개최)** ①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개최한다.

1. 회장이 개최를 요청한 때
2. 이사회 의결로 개최를 요청한 때

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**제20조(의사정족수)**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된다.

**제21조(의결정족수)**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22조(의사록)**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총회 종료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
2. 회의 출석구성원(회원, 참관인 등)
3. 의사의 결과 개요 및 결과
4. 의결사항

② 의사록은 의장 및 회의에 참석한 2인 이상의 회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이사회

**제23조(이사회 구성)**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(2인), 대외협력처장, 본회 등기이사,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
③ 본회의 원활한 운영전반과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사회를 두며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안건 이외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갈음한다.

**제24조(이사회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

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총회의 의결 사항(위임된 사항 포함), 집행에 관한 사항
2. 총회에 부의할 사항
3.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내규의 제·개정
4.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개최)**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개최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2.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 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회장은 제1항 2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6조(이사회회의 성립·의결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출석으로 성립된다.

- ②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1조 규정을 준용한다.(단, 위임된 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.)

**제27조(이사회회의 의사록)**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28조(준칙)**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6 장 정책연구소

**제29조(정책연구소)** 연구소는 소장 이외에 부소장, 수석연구위원, 선임연구위원, 정책연구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
-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1. 국회사무처가 본회에 위탁하는 연구과제 수행
  2. 연구자료의 수집, 정리 및 제공
  3.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의 수탁 및 위탁
  4. 기타 본회 및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
- ②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7 장 분과위원회

**제30조(분과위원회)**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
1. 정치경제
2. 교육사회

3. 문화체육관광
  4. 기획예산홍보
  5. 국방안보
  6. 농어업축산
  7.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분과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분과 수석부위원장, 부위원장, 연구위원을 둔다.

## 제 8 장 사 무 처

- 제31조(구성)**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-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, 사무부총장 2명, 기타 보조직원 약간 명을 둔다.
- ③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처 직원의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제9장 자산 및 회계

**제32조(자산의 구성)**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

1.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
2. 회비
3. 입회비
4. 기부금과 찬조금
5. 사업의 수입
6. 자산으로 인한 수입
7. 기타 수입

**제33조(자산의 관리와 수입의 사용, 공개)** ①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며 그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.

- ② 본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의회민주주의와 입법활동 등의 교육, 학술, 문화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
-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**제34조(회계년도)**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35조(회계구분)** 본회의 회계는 각 사업 년도마다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.

1. 일반회계: 통상사업 수행에 관한 수지
2. 특별회계: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사업에 관한 사업수지
3. 기금회계: 기금이 되어야 할 수지에 따라 취득한 재산 운용에 관한 수지

**제36조(사업계획 예산)** ① 본회의 사업계획예산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예산관련 분과위원회와 협의하여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그 사업년도 개시30일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사무총장은 제 1항의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37조(사업보고 및 회계)** ① 사무총장은 사업 년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사업보고서 2. 회계보고서

② 사무총장은 제 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수검 후 해당사업년도 종료 30일 전후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사무총장은 감사로부터 수검 확인된 제 1항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 10 장 보 칙

**제38조(정관 등 세칙)** ①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 정관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②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**제39조(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)**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1. 정관 및 제 규정

2. 회원명부

3.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

**제40조(법인해산)**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사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회사무처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## 부 칙

1.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19년 8월 27일

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 
이 사 장 윤 호 중